

미성년자 수익자 친권확인서 (보험금 청구용)



※ 미성년자 자녀 청구시에만 작성

확인사항

미성년자		주민등록번호	-	연락처	-	-
친권자	부	주민등록번호	-	연락처	-	-
	모	주민등록번호	-	연락처	-	-
내용	※ 해당사항에 체크 부탁드립니다. <input type="checkbox"/> 다른 친권자의 동의 또는 위임을 받아 친권을 행사(부모 모두 친권자인 경우) <input type="checkbox"/> 친권자 1인 지정(이혼 등) <input type="checkbox"/> 다른 친권자 사망					

안내 및 주의사항

- 본 미성년자 수익자 친권확인서 는 500 만원 이하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해 미성년자의 가족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 등을 대신하여 친권 행사자를 확인합니다.
- 미성년자란 만 19 세 미만인 자로 (민법 제 4 조), 미성년자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친권을 행사합니다(민법 제 911 조), 미성년자의 부 또는 모라고 하더라도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(친권상실신고 또는 대리권, 재산관리권 상실의 신고 등을 받은 부 또는 모, 이혼 시 친권행사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 또는 모)는 법정대리인이 아닙니다.
- 단, 미성년자도 혼인하면 성년자로 봅니다(민법 제 826 조의 2). 혼인은 법률혼(혼인 신고를 한 경우)만 해당합니다.
-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며,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(민법 제 909 조). 자녀의 친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.
- 이혼,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친권자에 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발급을 통해 친권 확인이 가능합니다.
- 회사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미성년자의 가족관계확인서 및 기본증명서 등 법정대리인(친권자, 후견인)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요청을 받는 경우 위 서류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.

본인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상기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(친권자)임을 확인하며,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아닐 경우에는 상기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청구한 보험금 등을 그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여 귀사에 반환할 것을 약속합니다.

20 년 월 일

친권자 _____ (인)
미성년자와의 관계 _____